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542
----------	-----

제출년월일 : 2000. 2. 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파주시 일원에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및 가로수의 조성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대지안의 조경과 유지관리 :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는 대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물을 성실히 유지·관리토록 하고, 시장은 훼손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안 제6조, 제7조, 제8조).

나. 가로수 식재·관리 :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손괴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며, 시민관리제를 실시하여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안 제13조, 제15조, 제17조).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조경시설 및 가로수의 조성·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녹지의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파주시 행정구역내 조경시설물, 녹지보호, 가로수등에 대하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도로법등 관련법령 및 이에 근거한 조례·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물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2.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
4. “가로수”라 함은 도시녹화·경관조성·공해방지 및 시민보건등을 위하여 시장이 시가지 및 가로변에 조화있게 심은 나무를 말한다.
5. “조경시설물”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하는 다음 각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류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설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정원석, 인공적인 시설물

제2장 대지안의 조경과 유지관리

제4조 (대지안의 조경면적) 대지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은 파주시건축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식재 등 조경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에 시설하는 식재등 설치 기준은 파주시건축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조경시설물의 관리의무) ①관리책임자는 제5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가지치기(나무의 모양조절 및 위험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2. 잔디, 초화류, 지피식물의 관리
3.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의 바로세우기
4. 정원석, 경계석등의 정비
5. 조각, 조형시설물, 분수 등의 기능유지와 보수·정비
6. 기타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②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나무가 고사한 경우 또는 나무의 모양이 지극히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제7조 (행위의 제한) ①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1.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외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벌채하거나 손괴시키는 행위
3. 기타 당해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숙아베기·가지치기등 작은나무의 육립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관리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관리청의 감독과 의무)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조경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등의 알선 및 공급등 조경시설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원상회복)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의 조경시설을 관리청의 승인없이 변경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조경시설물을 손상시킨채 방치하는 경우

제3장 가로수 식재·관리

제10조 (가로수 식재) ①가로수는 시장이 계획적으로 식재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가로수의 종류는 기후·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모양이 아름다운 나무로 한다.

③가로수를 심는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로 한다.

④가로수는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되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여건에 따라 2열 이상으로 식재할 수 있다.

⑤가로수 식재는 뿌리내림이 양호한 식재 적기에 심어야 한다.

제11조 (가로수 관리) ①가로수의 가지치기는 나무의 모양 조절을 위하여 늘어진 가지, 겹쳐진 가지 및 병·충해로 말라죽은 가지와 각종 공공 안내판을 가리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가로수의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 ④가로수의 생장촉진과 조기 황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수시설
· 거름주기 · 환토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로수등의 변상금등) ①시장은 사고 또는 위험한 재해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된 경우에 사고나 위험한 재해를 발생시킨자(이하“손괴자”라한다)에게 별표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손괴자가 원상복구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조경업체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하며, 변상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사업시행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옮겨심기·옮겨설치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손괴자가 미리 그 비용을 부담하고 옮겨심기·옮겨설치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제13조 (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로수를 손괴시키거나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2.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의 열매를 수확하는 행위

제14조 (시민관리제 실시) ①시장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학교·단체·공장·상가등의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가뭄시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3.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
5. 비상재해의 경우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6. 기타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모든 시민은 그 일상 생활에서 가로수에 위험한 재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위탁) ①시장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수의 식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파주시가로수피해 변상금 부과징수에관한지침에 의해 고지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기간중에 있는 손괴자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소 관 실 · 과 · 소		산 림 과 940 - 4411
입 안 자	산 림 과 장	심 광 용
	녹지 공원 담당	이 중 현
	담 당 자	유 중 삼

변 상 금 의 산 정 기 준

항 목	적 용 기 준	산 정 기 준	징수금 납입방법
원인자 부담금	1.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시장이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이식비	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나. 시장이 제거하는 경우	도급공사설계비 +제거비	
손괴자 부담금	1. 나무줄기 절단등으로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는 나무	도급공사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3분의1 이상	나무가격의 20퍼센트+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3. 악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나무가격의 10퍼센트+작업비	
○ 도급공사설계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나무의가격등 재료비를 포함한다)한 도급공사 설계비로 산정한다. 다만, 쥐똥나무는 보통인부만을 적용한다. ○ 나 무 의 가 격 : 조달청의 가격정보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의 시가를 적용한다. ○ 예치금의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예치금의 예치기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 담보기간 동안 예치한다. ○ 예치금의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옮겨심기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으로 조치한다.			